국외출장 보고서

Ⅰ. 출장 개요

1. 출장자

□ 성명: 박미숙 선임연구위원(형사법연구실)

김재현 부연구위원 (형사법연구실)

□ 연구과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XII) : 오판(Miscarrage of Justice)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 평가 • 정비방안 - 재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2. 출장기간: 2018년 5월 28일 ~ 2018년 6월 2일(4박 6일)

3.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미국 (뉴욕)

○ 방문기관:

- 뉴욕 Brooklyn Kings County Supreme Court
-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 Innocent Project

4. 출장목적 및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미국의 재심제도의 운용현황 점검과 문제의식 파악, 시사점 도출을 위함에 본 출장의 목적이 있음

- 2018년 사업인 “오판방지를 위한 사법시스템 평가 • 정비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재심재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을 방문하여 재심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법원을 방문함으로써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데에 본 출장의 목적이 있음.

- 미국은 1992년 이후로 공공정책기구인 Innocent Project를 통해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시스템을 개혁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법제도 및 실무 운용상 드러난 문제점도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Innocent Project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예시바대학 교수이자 변호사인 Peter Neufeld를 인터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제시해 줄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출장의 필요성

- 재심사례 및 오판방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법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음.
- 실제로 뉴욕의 Innocent Project와 Innocent Network를 통해 오판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 및 수사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이들의 활동을 알아보고 실제 법률 및 사법서비스 지원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오판방지 시스템정비에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오판은 주로 허위자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허위자백을 놓고 왜 허위자백을 하는지(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 형사사법학 권위자인 John Jay College의 사울 카신(Saul Kassin)교수를 통해 미국은 허위자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수사와 공판실무에서 어떻게 밝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이 문제는 법률문제보다 보다 정치한 법정심리학적 배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연구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함.
-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담함. Innocent Project의 활동 외에도 특별히 학계나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내지 대응방안, 실무적 접근방법 등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Ⅱ. 출장내용

1. 출장일정

일자	일정	숙박지	비고
5월 28일(월)	인천공항 출발 → 뉴욕 JFK공항 도착	뉴욕	항공기 이동 (14시간20분 소요)
5월 29일(화)	뉴욕 Kings County Supreme Court 방문 - Danny Chun 판사 인터뷰 - 배심원 선정절차 및 재판 참관	뉴욕	감사답례품 1개 증정
5월 30일(수)	Innocent project 방문 - Peter Neufeld 교수 (Director of IP) - Alexis Agathocleous 변호사(policy department of IP) -Michelle Feldman(policy department of IP) 과의 공동 인터뷰 및 자문회의	뉴욕	감사답례품 1개 드림
5월 31일(목)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 - Saul Kassin 교수 인터뷰	뉴욕	감사답례품 1개 드림
6월 1일(금)	뉴욕 JFK공항 출발		항공기 이동 (13시간20분 소요)
6월 2일(토)	인천공항 도착		

2. 세부내용

가. 뉴욕 Brooklyn 소재 Kings County Supreme Court 방문

○ 2018년 5월 29일 뉴욕 브루클린에 소재한 Kings County Supreme Court의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인 판사인 Danny K. Chun(한국명 전경배) 판사와의 인터뷰 일정으로 법원을 방문하였음. 일반적으로 Supreme Court라 함은 한국과 비교해 볼 때 대법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뉴욕은 예외적으로 타 주와 달리 Supreme Court가 대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을 의미한다고 함.

<뉴욕 브루클린 소재 Kings County Supreme Court 방문>

○ 대니 전 판사의 법조인 경력은 총 32년 정도 됨. 이 중 판사경력은 20년이며, 판사로 임용되기 이전에는 뉴욕 맨하탄 검찰청에서 검사로서 12년 경력을 가지고 있음. 실제로 판사로 임용된 사람들 중 다수가 전직 검사출신임

대니 전 판사는 재판을 하는 판사이기에 앞서 검사로서의 경력이 있는 만큼 대니 전 판사로부터 미국의 전반적인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피의자 구속제도나 피의자 신문제도는 우리와 달리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의자 신문은 특히 배심재판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실무관행과는 차이가 있음

- 다만, 추후 일정에서 얻게 된 내용을 부연적으로 언급하겠지만 미국에서의 피의자 신문이 어렵게 시작되는 대신 그 과정에서 상당히 피의자는 고통을 겪는다고 함. 대니 전과의 인터뷰를 마친 후, 전 판사의 허락하에 당일 대니 전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약식재판을 참관할 소중한 기회를 가짐

- 참관대상 사건의 경우 이미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으로서, 별다른 다툼없이 쟁점별로 판단사항을 피고인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됨. 미국의 경우 검사는 기소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으며, 전체 형사사건의 80%~90% 정도는 유죄협상에 따라 처리됨

<뉴욕 Kings County Supreme Court Danny Chun 판사와의 인터뷰>

○ 미국 배심재판(특히 배심원선정절차) 참관

- 미국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을 배심원이 하는 만큼 배심원의 역할이 큼. 따라서 배심원 선정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배심재판 참관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음. 사전에 예비적으로 선정된 배심원 후보단에 대하여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인의 순서로 배심원 개개인에게 질문을 하고 그 응답 여부에 따라 배심원을 기피하고 기피된 배심원은 배심원단에서 배제됨. 2007년 도입 시행이후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과정도 이와 거의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배심원 선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배심재판을 벤치마킹한 점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단의 선정절차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미국은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종과 나이 여부, 나아가 영어실력이 원어민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질문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음) 배심원단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미국이라는 국가가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점에서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기회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점도 이번 출장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이번에 참관한 배심재판의 경우 검사가 우리나라와 달리 검사복을 입지 않은 채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었음

나. Innocent Project 방문

○ 인노센트 프로젝트는 무고한 자라고 주장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을 DNA 테스트 구제하고 앞으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을 수행하는 국가의 소송 및 공공정책기구임.

- 그 출발은 26년 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몇몇 개인들의 변호를 위한 작은 단체에서 비롯되었으며, 수 십 명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약 300명 정도의 무고한 사람들이 석방되는 성과를 거둠
- 이들 석방된 자들의 경우 평균 13년을 복역했으며, 어떤 사람은 무려 35년이나 복역하고 석방되기도 함
- 이노센트 프로젝트는 현재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무료법률 및 수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애초 DNA 분석을 통한 오판 피해자 구제에 목적을 두었던 이노센트 프로젝트는 현재 DNA 수사 뿐만 아니라 NON DNA 케이스들도 다루고 있음. 법과학적 DNA 분석 기법은 가장 높은 확실성을 가진 증거분석 방법으로서, 증거와 특정인 그리고 특정한 관계를 밝히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러한 움 테스트 의 경우 법과학적 증거관련 재판의 10%정도에서만 활용될 뿐이라는 한계가 있어 DNA와 관련없는 사안의 경우에도 다른 형태의 법과학증거의 과학적 확실성을 높이고 개선하는 등 형사사법 통합필요성을 강조함

<뉴욕 맨하탄 소재 인노센트 프로젝트(Innocent Project) 방문>

○ 인노센트 프로젝트의 수장인 Peter Neufeld 교수를 중심으로 본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Alexis Agathocleous 변호사와 정책부서(policy department)에 소속된 Michelle Feldman과의 공동 인터뷰 및 자문회의가 이루어졌음.

<인노센트 프로젝트의 Peter Neufeld 및 관계자와의 자문회의>

○ 정책부서인 Policy department는 연방정부, 주 정부 및 도시들이 정책, 관행, 법률들을 개선하여 형사정책시스템에서 그릇된 유죄판결의 수를 줄이고 시스템 자체를 보다 신빙성 있게 만들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법제도가 무죄가 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에도 해당 부서의 목적이 있음. 그리고 인노센트 프로젝트에는 개혁이 요구되는 잘못된 관행들에 맞서서 싸우고 도전하는 전략소송부서(Strategic litigation unit)가 있는데, 과거에 특정 관행들이 소송과정과 재판의 결과에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만들어진 부서가 바로 전략소송부서임. 본 부서에 Alexis Agathocleous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음.

○ 인노센트 프로젝트는 커뮤니케이션 부서를 둠으로써 세상과 소통하면서 인노센트 프로젝트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어야 할 것인지 등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음. 나아가 인테이크(Intake)라는 부서가 있는데, 전국의 수감자로부터 무죄라고 주장하는 편지를 받아 질문지를 보내는 등 서신교환을 함으로써 사안을 추려내어 지원절차를 시작하기도 함.

○ 인노센트 프로젝트는 과학수사만큼은 주 단위가 아닌 연방차원에서 운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오래 전부터 과학수사에 대한 연방차원의 개혁을 시도해 왔으며, 국가과학수사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frensic science)를 설립하게 하는 등 과학수사에 관한 국가표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음.

○ 그 외에도 과학수사기관의 관리 및 통제시스템, 허위자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목격자 증언과 관련된 문제, 오판방지를 위한 미국의 실질적인 노력 등과 관련한 자문을 구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인노센트 프로젝트에서 행한 연구와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았음.

다. 사울 카씬(Saul Kassin) 교수 면담**(John Jay college)**

○ 미국의 존제이 칼리지(John Jay college)는 형사사법학 분야에 명망이 높은 교육기관으로서 위 학교 소속 범죄심리학자인 사울 카씬(Saul Kassin) 교수를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였음.

<존제이 칼리지(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

○ 한국에서의 재심 사안을 보면 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자백을 많이 하였고 이러한 허위자백 때문에 유죄판결 나는 경우가 많았음. 이와 같이 오판이 허위자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볼 때 허위자백과 관련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옴과 동시에 이 분야에 권위자인 카씬 교수와의 자문회의는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음.

<사울 카씬(Saul Kassin) 교수의 연구실>

○ 한국과 미국은 분명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허위자백에 있어서 미국의 사회적 배경이 반영되는 경우에 대한 답을 카씬 교수로부터 들을 수 있었음. 즉, 미국인들은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법시스템이 본인들의 무고함을 밝혀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므로 수사과정상에서 겪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예컨대,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DNA증거가 수집되어 과학수사기관에 보내질 예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무고함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수사과정에서 벗어나려고 허위자백을 한다고 함. 이 말은 무고함이 허위자백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무고함'과 관련하여, '미란다 원칙'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미란다 원칙에서 설시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함. 자신이 무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란다 원칙에서 말하는 피의자의 권리가 잘

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본인들처럼 무고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함. 따라서 자신이 무고하기 때문에 굳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없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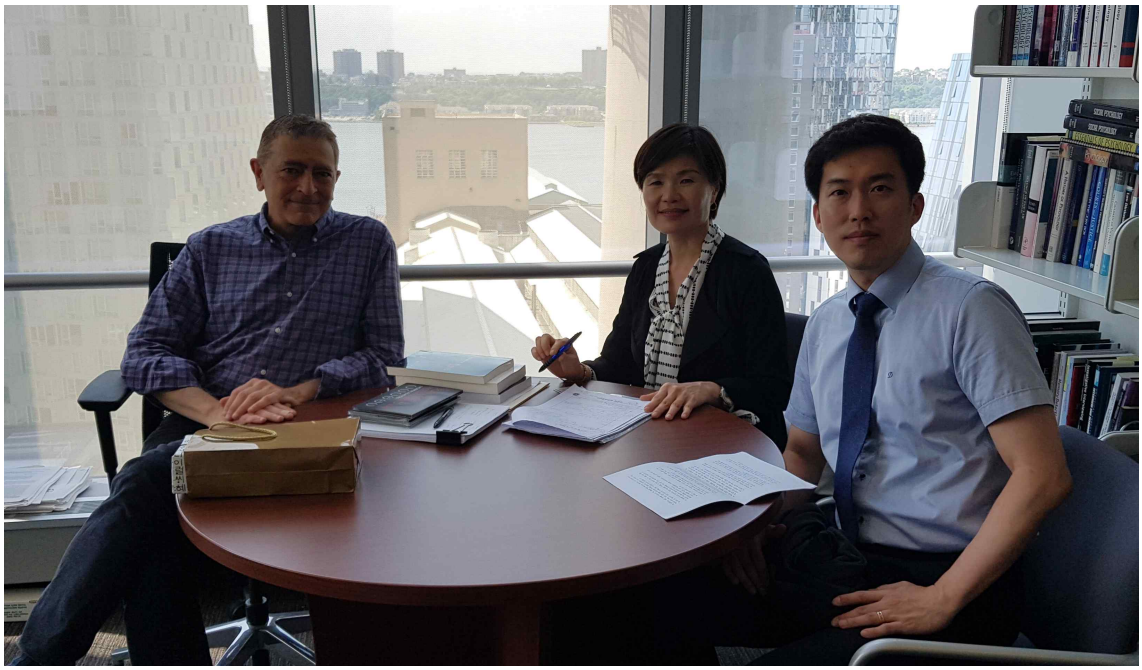

<사울 카씬(Saul Kassin)교수와의 자문회의>

○ 허위자백이 문제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사관들은 결코 무고한 사람을 신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함. 수사관들은 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닌,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만 피의자를 신문한다고 함. 특히 수사관들은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전제 하에서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임.

○ 수사관들은 피의자가 신문에 지쳐서 자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있는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도록 생생한 자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는다고 함. 허위자백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피의자 신문의 전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해야 한다는 것임. 나아가 현실

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판사와 배심원들이 녹화된 신문 전체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허위자백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자 정확하게 자백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함.

○ 그리고 신문기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예컨대, 영국에서 30년 전에 도입한 대치적 신문(confrontational interrgation)기법은 피의자에게 압박을 주어서 지치게 하는 신문기법이 아니라 수사관이 오히려 피의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신문기법으로서, 이러한 신문기법으로 인해 영국에서는 허위자백 사안을 보기 힘들다고 함.

Ⅲ. 기대효과

○ 위에서 보고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함과 동시에 그들의 의견 및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나아가 우리나라의 재심제도를 활성화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아직 재심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노센트 프로젝트와 같은 기관이 있다면 향후 재심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됨. 하지만 인노센트 프로젝트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기관의 출범은 쉽지 않다고 보임. 다만, 많은 변호사들이 재심에 관심을 가지고, 인노센트 프로젝트에서 행하고 있는 Intake부서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활발한 재심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우리나라 재심인용 사건(즉, 오판으로 확정된 사건을 보면)을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유죄판결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미국 출장을 통해 얻은 결과물, 예컨대 허위자백의 원인, 허위자백의 방지, 허위자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오판 방지를 위한 대응책으로서 신문기법의 변화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얻음으로써 연구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